



You Tube

강득구TV

김민석TV

생중계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논의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토론회



일시 2021. 8. 18.(수요일) 14:00 - 15:30

주최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국회의원 김민석 정춘숙 강득구

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 토론회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논의 -

□ 배경 및 목적

- 2022년까지인 한시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된 여성보호시설 긴급 구제 필요
- 모법 개정으로 상시 지원 안전장치 마련 및 여성보호시설 지원 부처 일원화 방안 논의

□ 간담회 개요

- 주 제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안 긴급 토론회
- 일 시 : 2021. 8. 18.(수) 14:00~15:00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위 소회의실(본관 653호) 예정
- 주 최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국회의원 김민석·정춘숙·강득구
- 참 석 자 : 별첨1

□ 진행 순서

구분	시간(분)	내용	비고
개회식	14:00~14:03(3)	○개회 및 참석인원 소개, 인사말	사회 : 강득구 의원 준참석 : 김민석 의원
	14:03~14:06(3)	- 김민석 약자의눈 대표의원 인사말	
	14:06~14:08(2)	-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14:08~14:10(2)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인사말	
< 정책과 현안 청취 >			
발제 및 토론	14:10~14:15(5)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지방세 감면 포함 필요성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14:15~14:20(5)	○포스트코로나 이후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
	14:20~14:30(10)	○소관 부처의 입장 - 국무총리실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14:30~14:50(20)	○자유 토론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한국공익법인협회 - 한국YWCA연합회 - 참석 국회의원 의견	
마무리	14:50~14:55(5)	○토론회 마무리 - 강득구 의원	
	14:55~15:00(5)	○참석자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별첨 1>

참석자 현황

○ 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1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 옥 선	상임대표
2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 현 진	상임대표
3	한국공익법인협회	김 일 석	상임이사
4	한국YWCA연합회	유 성 희	상임이사
5	한국YWCA연합회	박 동 순	국장
6	한국YWCA연합회	송 록 희	부장
7	한국YWCA연합회	이 혜 련	부장

○ 소관 부처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1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이 일 현	정책관
2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조 용 수	과장
3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서 진 희	사무관
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김 정 선	과장
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장 현 석	사무관
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박 상 현	사무관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공동주최 및 참석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1	약자의눈 대표의원	김 민 석	
2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 춘 숙	
3	약자의눈 책임연구위원	강 득 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지방세감면대상 포함 필요성

박동순(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발제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지방세감면대상 포함 필요성

박동순(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번호	시설별	시설수	주요사업
1	성폭력피해상담소	168	- 전문상담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 법률지원 - 보호시설등 연계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4	- 숙식(주거지원)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 자활지원
3	해바라기센터	40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원스톱 상담지원 -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3개 유형별 지원 내용이 차별화 - 의료지원 - 수사 법률지원 - 심리치료 지원 - 동행서비스등
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일반, 청소년)	39	- 성매매 유입되는 피해아동 청소년 조기발견 및 구조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2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유도
6	대안교육위탁기관	2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복귀 지원
7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숙식제공 및 귀국 지원
8	자활지원센터	12	- 성매매피해자의 자립 자활지원시설 - 전업을 위한 훈련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9	성매매피해상담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 - 법률/의료지원 - 인권유린상황에 조기개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10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주거지원)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 자활지원 - 동반아동 의료, 법률, 학습지원
11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주거지원)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 자활지원 - 동반아동 의료, 법률, 학습지원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11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 법률지원 - 보호시설등 연계
1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주거지원)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 자활지원 - 동반아동 의료, 법률, 학습지원
14	여성긴급전화 136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 상담 (초기 긴급상담) - 긴급 피난처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관련기관 연계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 및 가족 주거시설 지원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교육 기관

[참조] 2021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 경과요약

- 2020. 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
 -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
 -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한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2020. 10. 대전소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전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함.
 - 대전소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지방세 2천만원 납부.

- 2020. 10.~12. 여성가족부에 관련 제안 및 차관면담 요청
 -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행안부 문의-> 행안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하라고 함.

- 2021. 1.~ 각 국회의원 실 요청 및 관련 전문가 방향 자문
 -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안양) 국회의원 면담
 - 세무법인, 법무법인, 한국지방세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등 자문

- 2021. 4.~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에 정책 제안
 - 행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등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있으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총괄하여 방안을 마련해주도록 건의
 - 각 부처와 협의중
 -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과 연동하여 논의중.

- 2021. 5.~ 경기도 안양소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사례 발생
 - 가정폭력쉼터 공간부족으로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수도권 인구과밀지구 3배 중과세 부과로 인해 취득세 8천5백만원 부과예상 이슈 발생
 - 안양시, 경기도 관련 사항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에 감면포함필요성 제기
 - 6/23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여성가족부에 감면요구 공문 발송
 - 6/28 경기도 세정과에서 행정안전부에 감면요구 공문 발송

- 2021. 7. 1. 경기도의회, 경기도, 여성단체 간담회 및 도 조례개정요구
 - 7/ 1 경기도의회, 경기도와의 여성단체간담회 개최
 - 경기도에서 도 감면조례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기로 하였고, 의회에서 행안부

- 승인회신 직후 9월회기중 조례개정 추진하기로 함
 - 7/ 13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도 감면조례개정안 발송

○ 2021. 7. 5.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면담

○ 2021. 7.~ 가정폭력피해시설 지방세폭탄 관련 언론보도

- 2021.6.28 인천일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속 터지는 YWCA
- 2021.6.28. 인천일보/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인데...어느 여성시설의 울분
- 2021. 6. 29. 인천일보/ 차별논란 커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여성단체 연대 반격 준비
- 2021. 6. 29. 인천일보/ [사설] 여성보호시설에 세금폭탄이라니
- 2021. 6. 30. 인천일보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시 지방세 특례혜택 받나
- 2021. 7. 1. 인천일보 / 여성사회복지시설 세금폭탄...실낱 희망 생겼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3425>
- 2021. 7. 8. KBS1/ 가정폭력쉼터 이전하는데 갑자기 세금폭탄 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8912>
- 2021. 7. 9. 한겨레/ 가정폭력 쉼터 넓혀갔다가 수천만원 ‘취득세’ 날벼락
<http://naver.me/GAilemgD>

○ 2021. 7. 1.~ 31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감면 대상 확대위한 법개정 요구 운동

- 7. 31. 현재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총 118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411개,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47개, 개인 971명 참여

○ 2021. 7. 9.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법개정요구 건의 발송

○ 2021. 7.23.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실 면담

○ 2021. 8.23.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가정폭력 및 성폭력시설 취득세 감면대상 포함 도세감면조례개정안 심의 의결

○ 2021. 8. 18. 국회의원연구모임 ‘약자의눈’ 여성폭력시설 국가지원을 위한 토론회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의 필요성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운동은 80년대부터 민간의 여성단체의 활동을 시작으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1년 성폭력방지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을 통해 여성인권보호에대한 국가의 책무와 보호 및 지원이 제도화 됨.
-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법」 제2조의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임 (1쪽 관련 시설 현황 참조)
- 이중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숙식제공 및 주거보호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현재 여성폭력지원시설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최근 시설 이전과정에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로 인해 시설을 운영에 심각한 재정적인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 발생됨.
- 보호시설의 경우 제도화 이전 및 초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부담으로 주거시설을 마련해 운영해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 LH 지원으로 거주공간이 마련되어 파악한 바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민간소유의 시설은 30개소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 및 주변이웃에게 피해시설의 위치가 노출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급작스러운 시설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전시마다 지방세부담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음. 또한, 피해자지원시설은 의료 및 법률지원, 교육, 취업 동반아동의 학업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상의 이유로 주로 교통이 좋은 도심지나 공동주택에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에 30%이상의 시설이 집중되어있음. 수도권인구과밀지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의 경우 지방세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공간마련 자금을 확보하는데 만해도 어

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3배 종과세의 지방세부담은 더욱 감당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외출 및 이동제한으로 협소한 주거공간내에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인구밀집이 더욱 높아진 상황으로 주거안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간확대의 요구가 더욱 증가되고 있음.

- 2020. 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코로나시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시설은 입소자들이 시설내 거주하다보니 외출금지, 외부활동금지, 외부인 출입통제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공간부족으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공동체가 함께 집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설내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시설내 격리공간 확보 및 격리자 관리와 지원인력이 부재하여 입소자 발열 시, 시설폐쇄 및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부인 출입통제로,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의 운영도 외부강사 출입이 불가하여 종사자들이 외부 전문강사를 대신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고,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 증가, 방역업무 및 코로나 관련 지자체의 관련 자료 요구 제출등으로 종사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임.

재정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등의 재정적 지출증가도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되고 있음.

- 여성폭력 지원시설의 지방세 감면대상포함시 도세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취약의 우려가 언급되는데, 여성폭력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시설의 신규 취득 또는 이전시점에 발생되며, 이전에 관한 비용으로 인해 지역재개발이나 시설 위치노출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공간확대가 시급한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연간 1~2개소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됨. (실제로 2020년에 1개소, 2021년에 1개소가 해당되었음)

- 여성폭력시설 또한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이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여성폭력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시설 신축 및 증축, 시설보강, 기자재확충 등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생활공간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의 시설의 취득에 관해서는 지방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음.

- 사회복지 및 공익활동증진과 시설내 입소자들의 주거향상을 위해 반드시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본래의 목적사업에 반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폐쇄 및 중단의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재부과를 통해서 우려하는 비영리법인이 복지사업으로 감면받은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탈행위에 관해서는 충분히 추후에도 관리감독이 가능함.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지원 후 10년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한다는 지침이 있음.)

-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피해자지원에 애쓰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폭력피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치유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기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하루속히 필요함.

[참고자료]

여성폭력지원시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요구 제안서 - 한국YWCA연합회-

1. 제안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되어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외되어 있음. 이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지 조력, 타 보호시설이 「한부모지원법」 해당 시설의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조세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임.

○ 이에 현행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률의 오류를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 평등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임.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면제 대상관련 개정조항 비교 분석

1) 신·구조문 대조표

법령	개정전(2019)	개정후(2020)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u>사회복지사업법</u> 」에 따라 설립된 <u>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u>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u> (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u>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u>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법인</u>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법인 또는 단체</u> 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2조제3호에 따른 <u>사회복지법인</u>

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1.>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p>허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p> <p>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 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4. 12. 31.></p>	<p>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p> <p>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p> <p>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p> <p>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p> <p>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p> <p>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p>
--	--	---

		<p>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 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4. 12. 31.></p>
--	--	---

2) 신·구조문 대조표 분석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1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이 사회복지사업(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개정된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이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노인복지법제32조1항1호의 양로시설(입소시설로 무료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입소시설), 한부모가족법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모자·부자·미혼보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 요양시설)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1항의 개정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하여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오류를 범하였음.

예를 들어 ‘여성의 쉼터’ 시설 이용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모자인

경우라고 해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조2항」에 의한 시설이므로 지방세 면제가 안됨.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 내용 중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음. 공익성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면,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3) 입법발의된 법률개정안 개정이유 분석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33)」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1항의 개정이유를 분석해봄.

입법발의안에서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 원칙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개정)하였다고 서술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이라고 명시함.

입법발의안 분석을 통해 2020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1항은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지만 각 사업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현황 파악이 부족하여 오히려 그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됨.

쉼터나 상담소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시설임.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1항에 의한 노인, 아동, 미혼모 보호시설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보호 대상임.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보호시설도 마땅히 공익성에 비추어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제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전국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총 65개,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총 344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시설 총 28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총 30개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정보없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211개가 있음.

위의 시설들은 지역 여성과 아동보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시설로서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사업으로 조세부담능력이 매우 열악함.

이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공개시설로서 주변인 또는 가해자에게 시설의 위치가 노출되면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즉각 시설을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음. 법인명의로 자가 시설의 경우 긴급하게 이전할 때마다 이사비용 만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가정폭력시설의 경우 동반아동 전학이나 취업, 대중교통이용이 용

이한 수도권에 전국 쉼터의 34%가 집중되어있고 수도권과밀지구에 해당되어 3배 증가세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임.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21.1월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2019년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 조력 등의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공공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였다고 해도 마땅히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안(안)

법령	현행(2020)	개정 제안(안)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u>"대통령령으로</u>	

시행령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제10조 ①항 2호에 아래 시설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p>한정한다.</p> <p>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p> <p>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p> <p>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p>	
--	--	--

여성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들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함.

연명단체

여성폭력예방지원시설 감면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촉구 시민단체 연명 결과(~8/1)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 총 118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지원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현장상담센터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강원, 경기, 경기북부,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중앙, 충남, 충북)

(사)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센터, 21가정사랑훈련 학교, 가족사랑상담소, 강원여성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지원시설누리봄,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여성의쉼터,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양YWCA행복을여는집,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주YWCA솔빛타운,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굿패밀리상담센터, 남원YWCA사랑의집, 내일여성쉼터,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다솜공동체, 대전YWCA가족쉼터,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의집,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푸른희망담쟁이, 동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새힘터, 로템나무가정문제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누리터,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늘,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속초YWCA햇살의집, 순례자의집, 실만한물가, 안동가정폭력상담소,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안양YWCA꿈이있는집, 양평가정상담소,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여수YWCA늘푸른집,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여성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우리청소년여성쉼터, 제주YWCA여성의쉼터, 천안YWCA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평화여성의집,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미래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다솜마루,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마음상담소, 한빛여성의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행복가정폭력상담소

<전국 시민사회단체 - 총 411개>

(사)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 전남, 충남 등 소속단체 350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 거제, 광명, 광주, 구미, 군산, 군포, 김포,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수원, 순천, 안산, 양평, 여수, 이천, 인천, 전주, 정읍, 제주, 천안아산, 청주, 춘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환경연대(서울동북환경연대, 서울남서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강릉, 거제, 거창, 경주, 고양,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구미, 군산, 군포, 김천, 김해, 남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문경, 부산, 부천, 서산,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아산, 안동, 안양, 양산, 양주, 여수, 영주, 영천, 용인, 울산, 원주, 의정부, 이천, 익산, 인천, 전주, 정읍, 제주, 진안,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해남, 흥성, 화성, 화순, 임실, 논산)

한국YWCA연합회(강릉, 거제, 고양, 광명, 광양, 광주, 군산,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서울, 서천,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민우회(고양, 광주, 군포, 서울남서,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

한국여성의전화(강릉, 강화, 광명, 광주, 군산, 김포, 김해, 대구, 목포, 부산, 부천, 서울강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영광,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환경운동연합(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경기, 경기중북부, 경주, 고양, 고흥보성, 광양, 광주, 군산, 김해양산, 당진, 대구, 대전, 마산창원, 목포, 부산, 사천, 상주, 서산태안, 서울, 성남, 세종, 속초고성양양, 수원,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수, 여주, 예산홍성, 오산, 울산, 원주, 이천, 익산, 인천, 장흥, 전북, 제주, 제천, 진주, 창녕, 천안아산, 청주, 춘천, 통영거제, 파주, 포항, 화성, 횡성)

환경정의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녹색교통, 문화공동체 희응,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새날, 서울시NPO지원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민연대, 안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안양의료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사회복지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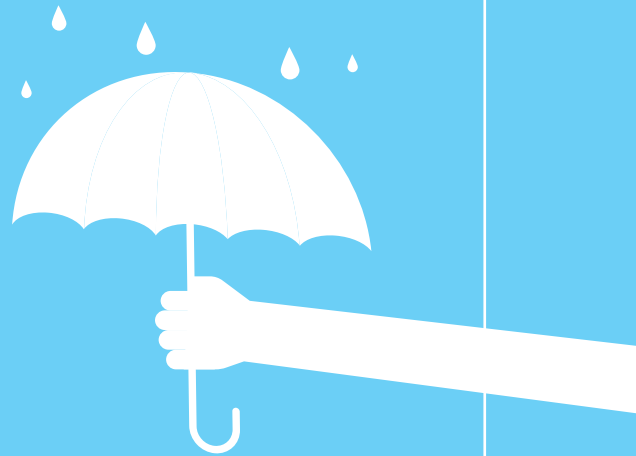
(사)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대안과 나눔,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 총 47개>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광주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시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도남사회복지관, 동굴레 청소년지원시설, 모자자립시설 상록수,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솔다가족센터, 수원YWCA방문요양센터, 수원YWCA 요양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엘림의집,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온누리심리상담센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의당 안양시위원회, 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영노인통합센터, 통영지역자활센터, 한국심리발달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자립꿈터,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 이후 여성시설운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노현진(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코로나 이후 여성시설운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노현진

1. 안전성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거주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 여성폭력방지 시설의 경우 97%이상이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로 한 공간에 실무자포함 20여명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이 대부분임. 충분한 개인생활 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소인원 제한, 자체격리실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나,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입소시켜 보호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체 격리실 마련이라는 현장에서 해결 불가능한 책임감 사이에서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밀집된 공동생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입소자의 외출 및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에서 쉬운 일이 아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 자체 격리시설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거나, 종사자와 입소자의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음.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종사자를 포함한 입소자의 충분한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입소자 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입소자 권리이기도 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특성상, 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아동치료공간, 휴게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거주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공론화 되어 화재, 지진, 폭염(한파), 폭우 등 재난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탄력성

■ 홍보

코로나이후 모든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가정폭력과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음.(식자재 물가 급등, 인테리어 소비증가 등) 신고를 하여 외부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집이라는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됨. 쉼터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자만 입소가 가능 했고, 그 인원도 입소정원의 50%-60%로 제한되었음. 사회가 어려울수록 약자를 향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 긴급지원 시설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피해자 지원

외부인력 출입금지 및 집단 활동 제한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사회문화활동, 근로활동이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됨. 준비 없이 갑자기 맞닥트린 상황에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있었음. 입소자 관리 및 모든 프로그램을 종사자가 진행하고, 시설내 입소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지원까지 종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음.

쉼터는 폭력피해자가 거주하는 시설로 전문강사 및 상담사가 중단 없이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별상담 등을 지원했어야만 함. 이를 위한 속한 메뉴얼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지침 외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음

■ 온라인 수업

소규모 시설내 온라인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아동의 온라인 수업, 입소자 직업훈련, 종사자의 zoom 활용한 화상회의가 빈번해 지면서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음. 사회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입소자 지원 및 업무수행이 차질이 초래됨. 현장의 의견과 건의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입소자 생계지원

외부활동 및 외출제한, 입소아동의 등교제한으로 시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 식사 및 간식수요 폭증으로 시설 생계비가 부족하고 입소자 식생활과 동반아동 간식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긴급생계비 지원 등 시설수요를 파악한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됨. 국민재난기금 지원 등에 시설지원을 따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스트리밍 서비스 및 기자재 지원 확대

스트리밍서비스(웨이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전시회, 음악회, 보드게임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입소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무위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아쉬웠음. 소규모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얼과 기자재 지원은 현장의 고충과 피해자의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3. 형평성

■ 시설면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안정적으로 동등한 지원이 요구됨. 사회복지시설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 쉼터와 상담소도 포함됨.

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비해 여성폭력방지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함. 여성폭력방지시설에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요구됨. 이는 대상에 따라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형평성에 문제와 아울러 대상자 인권보호와도 직결됨. 시설환경 또는 입소자 개인 공간 측면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아동과 함께 동반하는 시설의 경우 그 시급함이 촌각에 달려있음.

정신과적 진단이 요구되는 입소자, 발달장애인, 지체장애, 자녀동반(중·고·대 남아동반 포함) 등 입소자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음. 모든 특성의 입소자가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함.

스토킹 피해 및 데이트 폭력피해자 보호는 쉼터의 중요한 기능임.

상대적으로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수 입소중인 쉼터에 미혼 또는 젊은 연령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동반 거주하는 방식은 모든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법안이 발의되고 선제 보호 조치가 시행되는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공간분리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가진 입소자가 개별 특성이 맞는 보호와 치료서비스 그리고 자립 지원을 받아 폭력으로 부터 단절되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 긴급재난 지원

-백신 우선접종대상에서 제외

쉼터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됨

7월 이후 일부 지자체(서울 은평구)가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접종하였음.

20-30대 종사자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현재 입소자는 나이순에 따라 접종하고 있는 상황임.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우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공동거주시설이 우선접종 한 것에 반해 형평에 어긋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세대주에 지원함에 따라 폭력피해여성과 동반 입소 아동이 수혜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음. 행안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시설과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지원상황이 차이가 있었음. 어느 지역 쉼터에 머무르는가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설 생계비도 재난지원금 수준에서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함

■ 종사자 처우

-근무환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협박, 수사법적 지원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많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빈번이 일어남.

기관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입소자 공간 마련 우선으로 평균 1평 남짓 사무공간과 창고를 겸한 당직실에서 하루 종일 업무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

-급여 등 처우

여성가족부 지원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생활시설에 준하는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으로 시설장(원장)도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수준에 맞는 급여를 보장해야함. 종사자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업무 영역이 분명할 수 없고 당직을 포함한 프로그램개발과 진행 등 모든 업무를 넘나들며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중간관리자 직급 및 수당을 현실화해야 함. 24시간 365일 시설을 운영해야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야간 및 휴일근무의 일상화 등 종사자 처우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4. 융통성

- 사회적 상황에 맞는 시설지원 프로그램 부재

방역물품을 비롯한, 긴급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었지만 현장에 전달되지 않음. 종사자 탄력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위한 기자재 및 시스템 부재로 실제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꿀 수 없었음

- 물가는 폭등하는데 생계비는 제자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자재 소비로 인한 생계비 지출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적 있음.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는 시설은 더욱 심각한 부족현상과 기후 이상으로 인한 물가폭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예산 세목이동을 통해 탄력적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융통성이 필요했음.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구속 후 미성년자나 또는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학업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주거지원 또는 지역에 자립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통합 메뉴얼 부재

소규모시설 또는 상황에 맞는 대응책과 운영방안이 담긴 메뉴얼이 신속이 내려오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있었음. 이후 내려온 공문이나 대응 메뉴얼은 대처 방안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시설 또는 지역마다 상이하게 해석하여 혼돈이 있었음. 지역마다 다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쉼터 또는 상담소 등은 전국적으로 그 메뉴얼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면 입소자 내부적인 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집단모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며 심리·정서적 배고픔이 가중되고, 폭력피해자로서의 삶이 더 힘겨워 졌고, 고립감, 소외감이 심화되었음.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폭력피해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를 실현하여야 함.

